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23
----------	------

2016년 9월 2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6년 8월 12일,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16년 8월 14일
3. 상정일자 :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6년 9월 2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)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할 경우,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바,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임.
-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2002년 설립된 이후 “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제 11조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.

- 이에 따라 서울시 여성·보육·가족·아동정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·개발 및 시민체감형 정책실행 지원을 위하여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함.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1. 동의안 제출 개요

- 본 동의안은,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‘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(이하 “여성재단” 이라 함)’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, 여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개정(' 14. 5. 28)된 「지방재정법」은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 고 규정하였는데,
- 당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, 무분별한 출자·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,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의무화 한 것¹⁾이며, 매년 출

1) 신규대비표

지방재정법 [법률 제11900호, 2013.7.16., 일부개정]	지방재정법 [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, 일부개정]
제18조(출자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(出資)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	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

자·출연해 온 기존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대상이 되며, 예산 심의에 앞선 예산편성 단계에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 한 것임.

2.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근거 및 목적 등

- 여성재단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여성재단 조례” 라 함)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, 2002년에 서울시 출연을 받아 설립 된 이후 2016년 현재 14년째 운영 중임.
- 여성재단 조례에 따르면, 여성재단의 설립 목적은 ‘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²⁾으로,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³⁾하고 있음.
 1. 여성·가족·보육·저출산, 아동·청소년관련 정책 연구·개발
 2.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
 3.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
 4.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
 5. 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
 6.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
 7.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

<신 설>

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조(목적)

3)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재단의 사업)

8.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
9.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
10.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·가족·보육·저출산, 아동·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11.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○ 2016년 8월 현재, 여성재단의 조직 및 인력, 주요시설 현황, 예산현황은 다음의 <그림 1>과 <표 1>부터 <표 4>까지와 같음.

<그림 1. 조직 : 3실>



<표 1. 인력 : 정원 53명/ 현원48명>(단위: 명, 한시정원 4명 포함)

구분	계	대표이사	1급	2급	3급	4급	5급	기능직
정원	53	1	2	5	16	16	12	1
현원	48	1	1	3	18	12	11	2

<표 2. 시설개요>

구분	주요내용
위치	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
면적	대지6,488㎡, 건축 연면적 22,519㎡
규모	지하 3층, 지상 5층
건립기간	1999. 11 ~ 2002. 6

〈표 3. 주요시설〉

구 분	주요시설
대관공간	시청각실, 다목적실, 대식당, 세미나실, 회의실, 국제회의장, 아트홀 봄 등
여성가족 사무 및 정책 공간	여성가족재단, 여성능력개발원, NGO 공간임대, 성평등 도서관 등
편의시설	시간제보육, 스포츠센터, 수영장, 주차장 등

〈표 4. 2016년 예산〉

수입		지출	
구 분	금액 (비율)	구분	금액 (비율)
계	11,923(100.0%)	계	11,923(100.%)
출 연 금	5,260(44.1%)	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	6,301(52.8%)
자 체 수 입	6,664(55.9%)		
사업운영수입	8(0.1%)		
시설운영수입	4,255(35.7)		
기 타 수 입	742(6.2)	일반관리비	5,622(47.2%)
이월 잉여금	600(5.0)		
명시이월	-		
기본재산	394(3.3)		
대행사업수입	643(5.4)		
기부금수입	20(0.2)		

3.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여성재단에 출연한 예산규모는 총 256억원으로, 한해 평균 51억원('12년~16년, 5년 평균) 가량이며, 재단의 전체 예산대비 시 출연금의 비중은 평균 50%를 차지하고 있음.

〈표 5. 여성재단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〉 (단위 : 백만원, %)

연 도	예 산 액 (백만원)		비 율 (%)	
	총사업비	출연금	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	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
2012	9,038	5,790	64%	11%
2013	8,648	5,029	58%	-13.2%
2014	9,736	4,690	48%	-6.7%
2015	11,889	4,890	41%	4%
2016	11,923	5,260	44%	7.5%
총액	50,246	25,659	51%	-
평균(5개년)	10,246	5,131	50%	-

- 여성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는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⁴⁾와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운영재원 등)⁵⁾ 및 제11조(기금 및 출연금)⁶⁾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,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5)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운영재원 등)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기금운영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수탁사업수입금, 지정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6)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(운영재원 등)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기금운영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수탁사업수입금, 재단사업수익금, 지정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제1항의 지정기부금은 「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1조(기금 및 출연금) ② 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- 따라서, 여성재단에 대하여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, 동 재단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며, 재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 할 것임.
- 이런 점에서 보면, 여성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성평등 전문기관으로,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연구와 관련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이는 또 서울시의 여성 및 가족, 보육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탱크(Think tank)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,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, 여성재단 출연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여성재단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- 이와 관련하여, 서울시에서 지난 2013년에 실시한 연구용역(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성과진단 및 발전전략 수립)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, 여성재단의 주요 수익이 창출되는 ‘여성플라자’의 운영에 있어, “재단의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공간리모델링, 사업재구성,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하는 동시에 재단 정체성과 플라자 설립목적에 부합한다는 조건하에 자체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신사업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요구된다”

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- 나아가, 서울시 출연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, 2014년의 경우 여성재단은 , 전체 10개의 출연재단 가운데 8위를 기록하고 절대적 평균점수 또한 전체평균 이하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, 향후, 여성재단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.

〈표 6.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연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〉

연번	기관명	2014년	2013년	2012년
1	여성가족재단	85.08('나' 등급)	90.23('가' 등급)	89.47('나' 등급)
2	서울연구원	91.77	83.32	88.78
3	문화재단	91.33	84.95	87.55
4	신용보증재단	89.79	88.78	89.31
5	SBA	88.56	86.99	92.82
6	복지재단	86.69	86.02	88.66
7	자원봉사센터	86.19	84.47	85.92
8	디자인재단	85.49	82.17	87.54
9	세종문화회관	83.88	81.23	81.4
10	시립교향악단	77.64	81.04	77.85
	종합(평균)	86.64	84.93	86.64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3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양성평등 실현,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,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·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
- 관련법령
 - (공통)법령 : 민법(제32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(개별)법령 : 양성평등기본법

- 조 례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제11조 ②항

“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”

나. 주요 사업

- 여성·가족·보육·저출산, 아동·청소년 관련 정책연구·개발
-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,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
-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
- 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
-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·가족 양립 문화 조성 사업
-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 여성·가족·보육, 아동정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·개발 및 시민체감형 정책실행을 위한 역량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,
- 서울여성의 경제력 강화, 체감하는 성주류화, 여성안전과 사회통합, 서울 가족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우효정 (☎ 2133-5031)